「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10월 23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20년 11월 04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11월 04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가. 제안이유

2020년도 조직진단 용역 결과 반영 등에 따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정비를 실시하고, 지역현안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700명 → 742명 (증 42명)
  - 집행기관의 총수 : 688명 → 730명 (증 4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2명 (변동없음)

○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안 별표 3)

- 총　　계 : 700명 → 742명 (증 42명)
- 정 무 직 계 : 1명 (변동없음)
- 일 반 직 계 : 675명 → 717명 (증 42명)
  · 4급 : 3명 (변동없음)
  · 4~5급 : 1명 (변동없음)
  · 5급 : 31명 → 32명 (증 1명)
  · 6급 이하 : 639명 → 681명 (증 42명)
  · 전문경력관 : 1명 → 0명 (감 1명)
- 연 구 직 계 : 3명 (변동없음)
- 지 도 직 계 : 20명 → 21명 (증 1명)
- 별 정 직 계 : 1명 → 0명 (감 1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688명에서 730명으로 **42명을 증원**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700명에서 74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 2018년 2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관리·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보통교부세 감액기준에 반영되어 온

기준인건비 자율범위 항목을 폐지하고,

인구10만 명 미만의 시·군도 실·국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기구 설치기준을 조정 시행한 이후,

우리군도 행정기구를 확대하고 정원을 증원하여 왔습니다.

인구변동과 공무원 증원추이는 「붙임 1」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10월 기준, 우리군 정원관리 운용 측면을 살펴보면,
공무원 총 정원은 700명이나, 결원은 52명,
별도 정원은 46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준공무원인 공무직 183명을 포함하면 전체공무원은 929명,
이번 개정으로 42명이 증원된다면, 실질적 전체공무원은 971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인구 3만에서 5만인 31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61명이며,
평창군은 700명일 때 60명으로, 평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정원이 742명으로 조정되면 56.21명이 되고,
공무직을 포함하면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45명이 되어
주민수혜의 폭은 매우 커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평창군 신규임용공무원은 최근 5년간 250명이 임용되어
매년 평균 50명 정도가 충원되어 7%이상의 순환율로

< 최근5년간 신규공무원 임용현황 > (단위 : 명)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50	46	34	50	65	55

이는 신규공무원의 충원 폭이 커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요구에 따른

신규공직자의 능력개발과 교육 등의 조직활력을 위한 노력은 크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우리군은 1999년 5만에 가까웠던 인구수가
2019년 말 기준, 4만 2천명으로
최근 인구현황은 매년 500명 정도씩 감소 추세인 반면
행정기구와 정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준인건비 추이를 보면,
2016년 456억, 2020년 560억원으로,
5년 사이 100억원 이상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기준인건비 편성현황> (단위 : 억원)

합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528	456	469	516	527	560

출처 :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1995년 처음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이번 개정 조례안의 정원 총수 증가폭은 최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행정기구 확대와 정원 증가는 필연적인 고정비용 증가를 수반하여
우리군에 장기적 재정부담이 되는 만큼
조직 및 인력관리에 있어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와 함께,
인구변화에 따른 새로운 환경변화의 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2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평창군수는 기본인력계획 수립 할 때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장은 협의 이전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기본인력계획이 법령 상 의무사항인 지방의회 보고가 잘 이뤄지고 있는 지 또한 확인해 볼 사항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00명”을 “7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88명”을 “730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742**	**742**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717	717				
4급	3	3				
4~5급	1			1		
5급	32	16	2	5	1	8
6급 이하	681	681				
전문경력관 소계	0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21	21				
지도관	1			1		
지도사	20	20				
별정직 계	0	0				
6급상당	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70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688명 2. (생 략)	제2조(정원의 총수) ---------- ---------- 742명----------. 1. ---------- 730명 2. (현행과 같음)